

# 기계항공공학부 현장실습 학점 인정 내규

2024. 07. 24 개정

## 1. 내규 제정의 목적

현장실습을 권장하되 학점 인정 기준을 정하고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하고자 함.

## 2. 내용

기계항공공학부 재학생은 본교 취창업전략처에서 주관하는 “IPP장기현장실습” 또는 “현장실습(인턴십)”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항에 의거하여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음.

2.1 현장실습 근무 기준은 평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2.2 IPP장기현장실습 학점 인정

- 학기 중 장기현장실습(15주 이상)을 수행하는 경우 15학점을 인정함. 단, 전공선택은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하고, 나머지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함
- 다전공 학생의 경우 전공선택은 최대 6학점, 나머지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함

### 2.3 현장실습(인턴십) 학점 인정

- 학기 중 현장실습은 실습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인정함
  - 15주 이상: IPP장기현장실습의 학점 인정 기준을 따름
  - 12주 이상: 12학점을 인정하되, 전공선택 최대 6학점, 나머지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함
  - 12주 미만: 인정하지 않음
- 방학 중 현장실습은 6주 이상인 경우에만 일반선택 3학점으로 인정. 단, IPP 장기현장실습과 연속으로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현장실습의 경우, 4주 이상이면 일반선택 3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.

## 3. 제한사항

- 학기 중 현장실습 학점 인정은 재학 중 1회로 제한
- 방학 중 현장실습의 학점 인정은 재학 중 1회로 제한

- 학기 중 실시한 현장실습에 대해 인정받은 전공선택 학점은 공학인증프로그램의 공학주제 학점으로 인정여부는 공학교육연구소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.

#### 4. 적용 시기

2022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하며, 기 인정받은 전공선택 학점은 그대로 인정한다.

#### 5. 경과조치

기계공학부, 기계공학과, 기계설계학과,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소속의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.